

# 일본의 「해달·물개어렵법(臘虎膾腩獸猟法)」과 독도의 강치 어업\*

김 수 희\*\*

(e-mail : sic1225@daum.net)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해달·물개어렵법(臘虎膾腩獸猟法)」에 따른 독도 강치어업 |
| 2. 일본 근해의 물개 어장과 영·미어렵선 진출 |                                    |
| 3. 강치어장을 둘러싼 조·일간의 어장 경합   | 5. 맺음말                             |

キーワード： 臘虎膾腩獸猟法(Sea Otter, Fur Seal Fishing Law), 獨島アシカ(Dokdo sea lion), 隱岐 漁民(Oki fishers), 鬱陵島漁民(Ulleungdo fishers), 中井養三郎(Nakai Yozaburo), 竹島漁業合資会社(Takeshima Fishing Corporation)

## 1. 머리말

1905년 1월 28일 일본 각의는 시마네현 오키도사(隱岐島司)의 관할 아래에 두자는 내무성 청의를 승인하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고시하였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하고 무주지 선점론에 의해 편입하였지만 패전 후 일본의 영토 범위를 결정한 연합국 측의 기본 방침이었던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에 대처하기 위해 고유영토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 A5B8A020668830).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한일관계사.

1) 竹内猛(2013) 『竹島=獨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報光社(송휘영·김수희 역 『독도=죽도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도서출판선인. 최장근(2011) 『한국의 울릉도·독도개척사에 대한 일본의 조작행위』 『한국일본문화학회』51, p.408.

최근 일본은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을 영유권 근거로 이용하면서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 독도어장을 이용한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부각시키고 있다. 독도어장을 독점하고자 했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주 나카이)가 ‘강치의 절멸을 걱정해 강치어업을 허가제로 하기 위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할 것을 정부에 청원하였다’고 어민의 자발적 의지가 청원의 계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생업에 전념하는 어민의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영토편입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sup>2)</sup>.

본 연구는 1894년 공포한 「해달·물개어렵법(臘虎臘肭獸獵法)」을 통해 1905년 일본이 불법 편입한 어렵법 적용 과정을 살펴 본 것이다<sup>3)</sup>. 19세기 말기 일본 근해로 외국 어선들의 출몰로 일본 근해어장을 침범하자 일본은 출입하는 외국 어선들을 쫓아내고 자국의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1894년 「해달·물개어렵법(臘虎臘肭獸獵法)」을 제정하였다. 물개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일본어민이 어렵원을 제출하면 누구나 허락하였다.

그러나 어렵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로 진출한 오키도 어민들은 신고하지 않았고 단지 러시아어장에서 어업권을 허가받지 못해 쫓겨난 나카이 요자부로만 한국정부에 어업허가원을 제출하려고 하였다. 나카이를 제외하면 오키도 어민 어느 누구도 어렵권 허가에 관심이 없었다. 오키도어민들은 독도를 한국의 부속섬,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신고할 필요도 없었고 어장 이용에만 관심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독도어장을 둘러싼 조·일어민의 강치어업의 실태와 영토 편입 이후의 「해달·물개어렵법(臘虎臘肭獸獵法)」 적용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일본근해의 물개 어장과 영·미어렵선 진출

해수(海獸)어업은 물개와 해달 등을 포획하여 그 가죽을 이용하는 모피산업이다. 이 산업은 18세기경부터 모피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업적 어업으로 발달

2) 塚本孝(2007)「奥原碧雲竹島関係資料をめぐって」『竹島文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会, p.62, 竹島問題研究会(2014)『竹島問題 100問 100答』WILL출판, 日本外務省(2014)『竹島』「竹島問題10のポイントQ&A付き」,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

3) 1894년 공포한 「해달·물개어렵법(臘虎臘肭獸獵法)」은 해달과 물개 등 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다. 물개가 상업적 가치가 높고 대부분 물개를 포획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편의상 물개어업으로 통칭한다.

하였는데 물개는 다른 포유류와 달리 부드러운 털이 촘촘히 자랐고 거친 털(荒毛)을 잘라 코트, 소울 등 고급 장신구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고가의 상품이었다. 모피는 대부분 영국에서 소비되었으나 물개 번식장이 베링해 주변 미국과 러시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어장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미국회사 대러미회사(大露米会社)는 1799년 러시아 정부로부터 베링해의 피리피로프섬의 어렵전매권을 취득해 러시아어장에서 대규모 어장을 경영하였다. 이 회사는 10년 동안 매년 6만 두를 포획하였고 19세기 초반에는 2만두로 감소하자 캄차카반도의 코만도르스키예(komandorskie)로 이동하였다. 이 회사는 원주민들을 고용해 물개 가죽을 대량 확보하였고 어렵선들은 물개어장을 찾아 동북아시아 근해로 이동하였다<sup>4)</sup>.

물개의 남획으로 러시아는 자국 물개 번식장을 보호하면서 코만도르스키 및 로멘도 주위 30해리, 러시아연해 10해리내에서의 어렵을 금지하고 포획량을 3만두로 제한하였다. 미국도 1867년 알래스카를 구입하자 자국의 어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포획 두수를 7,500두로 제한하고 1891년 영국과 영미가조약(英米假條約)을 체결하였다. 물개어장으로 유명한 미국과 러시아가 어장 보호 정책으로 물개어업을 통제하자 어렵선들은 북해도 주변 항구를 모피의 수송과 판매, 필수품의 공급지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1875년부터 1893년까지 일본 북해도 하코다테(函館)에 기항한 어렵선 75척 중 미국선은 48척, 영국선은 22척이었다<sup>5)</sup>.

이렇게 어렵선이 일본 근해로 진출함에 따라 일본은 1884년 5월 23일 태정관포고 16호 형법 제373조를 제정해 북해도에서의 어렵과 가죽 판매를 금한다는 명령을 내렸다<sup>6)</sup>. 그리고 1886년 12월 칙령 80호 「해달 및 물개 어렵과 가죽 수입 판매 규칙(臘虎並臘納獸獵獲及生皮輸入販賣規則)」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외국 어렵선에 대항해 자국의 어렵업을 발달시킴으로써 외국 어선을 쫓아내는 것이 득책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본 정부가 귀족원에 제출한 「해달물개어렵법(臘虎臘納獸獵法)」의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4) 奥本直人(1980) 「北太平洋ホットセイの系統群とその混合」 『遺伝』 34卷 2号.

5) 二野瓶徳夫(1981) 『明治漁業開拓史』 平凡社, p.143.

6) 단 농상무성의 특허를 받는 자는 제외된다고 하여 농상무성장관의 특허를 받지 않으면 북해도에 있어서 어렵어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특허제도를 채용하였다.

해달은 치시마(千島) 여러 섬에만 서식하고 있으므로 북해 전도를 금어구로 할 필요가 없고 물개는 그 밖에 해면 즉 본주(本州) 동서안(東西岸)을 회영하고 킨카산(金華山) 앞바다에서 많이 남획되고 있으므로 지금 단지 북해도 연안을 금어구로써 하는 것도 결국 번식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따라서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적당한 금렵구 금어기를 정하여 구역 외에는 자유롭게 포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족의 보호와 엽업의 발달을 행하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sup>7)</sup>

일본은 북해도에서 어렵과 가죽 판매를 금지하는 것보다 일본인의 어렵을 허가하는 「해달·물개어렵법안(臘虎臘熊獸獵法案)」을 제정, 1895년 공포하였다. 이 어렵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조 해달·물개(臘虎臘熊獸)을 하려는 자는 농상무성대신의 면허를 받을 것
- 제2조 해달·물개보호를 위하여 칙령으로 구역과 금어기를 두어 엽선, 엽구, 엽법을 제한하여 암수컷, 연령에 의하여 그 엽획을 금지할 것
- 제3조 군함 함장, 경찰 관리, 세관 관리 그 밖의 관리는 칙령에 의해서 해달·물개어선의 선적 증서 및 어획물을 뺏을 수 있다
- 제4조 금렵구내 또는 금렵기간에 있어서 해달·물개어렵을 한 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구속과 20엔 이상~5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의 소유에 관계 없이 엽선, 어구, 선구, 모든 어획물을 몰수한다.
- 제5조 엽선, 엽구, 엽법의 제한과 암컷, 연령에 의한 엽획의 금지에 위반한자는 11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금고 또는 2원 이상 5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 제1조의 면허를 받지 않고 물개어렵을 한자는 20엔 ~5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획물을 몰수한다.
- 제7조 제4조, 제6조에 의하여 몰수되어진 어획물을 판매했을 때는 그 댓가를 추정한다. 이 법률은 1896년(명치 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sup>8)</sup>

이 어렵법에서는 번식장과 어렵기간을 설정하고 엽선과 엽구, 엽법을 제한하면서 어렵업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을 어기는 자는 1개월~1년 이하의 징금고, 또는 20원~5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엽선, 선구, 엽구, 어획물을 몰수한다. 또한 어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상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일본의 어렵업을 발달시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허가서만 제출하면 누구든

7) 片山房吉(1983) 『大日本水産史』有明書房, pp.411-412.

8) 전계서, pp.410-411.

지 자유롭게 어장 이용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적용대상이 된다. 만약 허가원을 제출하지 않고 어업을 한다면 1개월~1년 이하의 중금고, 또는 20원~500엔 이하의 벌금, 영업, 선구, 영업, 어획물을 몰수 등 엄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독도로 진출한 오키도 어민들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가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단지 러시아에서 어업허가원을 받지 못해 쫓겨난 나카이만 한국 정부에 허가원을 제출하려고 하였다. 독도로 진출한 오키도 어민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어업 발달정책으로 일본의 해수어업은 발달하여 1894년 일본인 소유 어업선은 3척, 포획수가 47두였으나 1895년 5척, 2,724두, 1897년 14척, 물개 4,616두, 해달 26두로 증가하였다. 원양어업장려법이 시행된 1898년에는 어업선이 16척으로 증가하였고 물개 4,757두, 해달 21두, 1901년 어업선 19척, 물개 7,045두, 해달 11두가 포획되었다9).

<표1>을 보면 1900년 러시아령 및 일본어장 주변에서 36,233두의 물개가 포획, 미국령 알래스카와 피리피로프에서는 22,298두가 포획되었다. 1900년 전 세계의 물개 포획량의 47%가 러시아령 및 일본 주변의 북해도, 쿠릴열도 캄차카 반도 부근에서 포획되었고 이후 남미 호른각과 남아메리카 희망봉, 남해로 확산되고 있었다. 일본 어업선의 활발한 활동으로 외국 어업선들은 일본 근해 어장을 떠났고 일본이 의도한 대로 외국 어업선을 쫓아낼 수 있었다.

<표1> 세계 어업 번식장의 포획 두수 (단위: 두)

	1899년	1900년	1901년	1902년	1903년
알래스카·피리피로프	26,434	22,981	22,276	22,719	15,295
러시아령 및 일본	32,802	36,233	24,500	18,318	16,461
로보스섬	14,918	15,116	16,864	16,376	11,070
남미 호른각	912	1,415	1,475	1,957	2,872
남아프리카 희망봉			316	200	99
남해 등					793
계	75,066	75,745	64,431	59,570	46,590

<출전> 牧朴眞(1904) 『沿海州及薩哈噠島概況』農商務省水産局, p.51.

9) 岡本信南(1965) 『近代漁業發達史』水産社, p.103.

그리고 일본은 근해어장으로의 외국 어업선 진출을 국방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외국 어선을 쫓아내려면 일본의 대형 어업을 발달시켜야한다는 취지가 1897년 공작 고노에 아츠마로(近衛篤磨)외 13명의 찬성으로 「원양어업장려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농상무성 대신 에노모토 타케아키(榎本武陽)가 1897년 3월 16일 제출한 것으로 중의원 본회의에서 에노모토는 ‘우리 원양어업은 유치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업선이 일본근해에 와서 해달, 물개, 고래를 잡고 있다. 또한 우리가 개발해야 할 어장은 남양제도의 상어, 해삼, 진주에서부터 북해의 대구까지 적지 않은데 우리 어선은 매우 빈약하고 어업자도 원양어업에 숙련되어 있지 않다’고 일본어업의 실태를 보고하였다. 전근대적 일본어업을 근대식 어업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원양장려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sup>10)</sup>. 프랑스와 캐나다의 항해술이 발달한 것은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과 승무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원양어업장려법」은 1897년 3월 31일 법률 제45호로 공포되어 장려금 15만 엔이 지출되었다<sup>11)</sup>. 이에 따라 원양어업 장려금으로 건조된 어업선 및 대형어선이 증가하였고 조선어장에서는 근대식 노르웨이 포경업 회사인 ‘원양어업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07년 나카이도 원양어업 장려금으로 동력선을 건조해 독도를 왕래하였다<sup>12)</sup>.

### 3. 독도어장을 둘러싼 조·일간의 어장 경합

#### 3.1 1900년 이전의 강치어업

동해의 포유류 번식장 독도에는 강치 떼로 뒤덮여 부근 해상에는 소용돌이로 숲을 이루었다. 그 숫자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강치로 뒤덮고 있었다.

10) 農商務省水産局(1918) 『遠洋漁業奨励事業報告』 p.4.

11) 원양어업장려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양어업을 당려하기 위해서는 매년15만엔을 지출한다. 총 톤수 50톤이상, 범선 30톤이상의 선박으로 승무원 5분의 4가 일본 선원이 있는 선박에 대해 원양어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법은 원양어업을 육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선박과 승무원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新川伝助(1958) 『日本漁業における資本主義の発達』東洋經濟新報社, pp.65-66.

일본 오키도인 사이에서는 “이 섬에 괴물이 살고 있어 괴성을 내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고 울음소리는 1리(里) 밖에서도 들렸다고 한다<sup>13)</sup>. 울릉도 개척기 울릉도를 왕래한 오키도 어민들은 괴성을 내는 강치의 섬으로 접근하지 못했고 갈 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울릉도를 왕래한 전라도인들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나무 못, 미역 채취, 강치 포획 등으로 독도로 갔다. 물과 쌀감이 부족하여 장기간 체류하지 못하였으나 울릉도를 근거지로 왕래하였다. 울릉도에도 강치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울릉도로 파견된 수도사들은 1892년 4월 수도제가 끝날 때까지 강치를 포획하여 진상하였다<sup>14)</sup>. 1882년 울릉도 개척으로 파견된 이규원은 울릉도에 있는 강치 굴을 발견하였고 어민들은 그물로 잡아 그 고기를 먹는다고 기록하였다.

5월 초 9일 이날 두루 둘러본 각 浦의 연변에는 굴이 9개 있었는데, 海狗와 海牛가 새끼를 낳아 길렀다. 섬에 들어와 배를 만드는 바닷가 사람들이 그물이나 총으로 잡아 그 고기를 먹었다.<sup>15)</sup>

울릉도의 8개굴에 강치가 서식하였고 거문도인들은 총이나 그물로 강치를 잡았다. 거문도 출신 김윤삼 노인의 증언에 의하면 1820년경부터는 독도로 가서 강치잡이를 했다고 구술하였다.

돌섬은 큰 섬 두 개 그리고 작은 섬이 많이 있었는데 큰 섬 사이에 뗏목을 놔두고 열흘 남짓 있으면서 가제(강치)도 잡고 미역 전복 등을 바위에서 땀다. 그리고 울릉도에 다시 들어와 원산이나 대마도로 가서 일본사람들에게 팔았는데 가제(강치)를 꼭 좋아했다고 한다. 가제의 살은 먹고 가죽을 가지고 신발 등도 해 신었다.<sup>16)</sup>

또 다른 증언으로는 나무못 벌채지로 독도로 가면서 강치를 잡았다고 하였다.

독도까지 가서 나무를 베어와 그 나무못으로 조립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바위섬에

13) 「리양코도 영도편입 및 대하원 설명서」.

14) 한철호(2012)「독도·울릉도 ‘가지(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한국사학보』49.

15) 이규원『검찰일기』

16) 천석짜리 뗏목배로 내왕」『민국일보』1962년 3월 20일.

서 자란 나무는 왜소하지만 몇 백년 몇 천년 풍운에 시달려 목질이 쇠만큼 단단해져 있기 때문이라 했다. 독도나무를 베어오면서 물개 한 마리를 잡아와 기름을 짜고 그 기름으로 밤을 밝혔다.<sup>17)</sup>

위의 증언은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수 백년 전부터 울릉도를 왕래한 거문도인들이 쇠뿔을 대신해 독도에서 단단한 나무뿔을 벌채하고 강치도 포획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석도(石島), 즉 독도를 ‘돌섬’이라고 불렀고 10일 정도 체류하면서 나무뿔과 강치, 전복과 미역을 채취해 울릉도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새로 건조한 선박에 목재와 미역 그리고 강치기름을 실은 항아리 등 각종 물품을 싣고 서울이나 서해안 영산강 곡창지대로 갔다. 거문도인들은 강치기름을 ‘애우지름’이라고 하였는데 영산강 포구에서 쌀과 교환하였고 가죽은 물에 젖지 않는 특성으로 안장·풀무·가죽신 등의 재료로 판매되었다<sup>18)</sup>. 강치의 포획수는 자가 판매용으로 몇 마리에서 십 여마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서 강치 가죽과 기름의 수요가 발생하면서 자본가 나카이 요자부uro가 독도로 진출하였다. 이미 울릉도인들은 독도에서 강치를 잡아 울릉도에서 가공하였는데 1904년과 1905년 강치기름 각각 800관, 강치기름 83상자를 일본으로 수출하였다<sup>19)</sup>. 이것은 1904년 울릉도 거주자 岩崎組(한국인 7명, 일본인 3명), 1905년 岩崎組(한국인 7명, 일본인 3명), 沼田組(한국인 6명, 일본인 3명), 浦郷組(한국인 3명, 일본인 7명)가 울릉도를 근거지로 독도에서 잡아 온 것이다<sup>20)</sup>. 이들은 울릉도를 근거지로 해서 강치기름을 제조해 일본으로 수출할 정도로 강치의 경제적 가치가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1903년 오키도를 근거지로 한 오키도 어민이 진출하였다. 이 가운데 근대적 어업을 지향한 나카이 요자부uro가 진출하였는데 그는 자본가로 울릉도인의 도항을 막으려고 한국정부에 독점적 어업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과정에서 일본의 관료들은 그를 사주하여 독도는 무주지하고 알려주었다.

17) 이규태「이규태코너」『조선일보』(이예균·김성호(2005)『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 88』 p.307 재인용)

18) 李滢『星湖僊說』제3卷, 天地門, 「鬱陵島」; 東國文獻備考『輿地考』; 安龍福『東史綱目』.

19) 앞의 奧原碧雲(1907), pp.74-80.

20) 앞의 책, 川上健三(1996) p.185.



『竹島及鬱陵島』의 저자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은 1906년 3월 나카이로부터 독도 강점 과정을 듣고 동년 5월 20일 「죽도경영자나카이요자부로 입지전(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伝)」을 썼다. 이 기술에는 나카이의 증언을 다음과 같은 기록하였다.

해도에 의하면 조선의 판도(版圖)에 속하여 일단의인의 내습을 만나도 이것을 보호 받을 길이 없고 사업을 하여 자본을 투자하는데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동도(독도-주) 대하를 조선정부에 청원하여 한꺼번에 어렵권을 점유하려고 결심하였다.<sup>21)</sup>

1903년경 오키도를 근거지로 진출한 나카이가 어장 독점을 획책하자 어민들간의 경합이 발생하였고 결국 일본정부에 영토편입원이 제출되면서 오키도를 근거지로한 나카이가 어장을 독점하게 된 것이다.

### 3.2 1897년 강치어장을 ‘발견’한 오키도 어민

1894년 2월 18일 울릉도 향로 개척 명령을 받은 시마네현 수산기사 사토 교스이(佐藤狂生)는 울릉도로 가는 도중 “(오키에서) 배를 저어 50여리 가면 외로운 섬(孤島)이 있는데 세간에서는 리랑코 섬(リランコ島) 이라고도 한다”고 독도를 리랑코도로 기록하였다<sup>22)</sup>. 그는 리랑코도는 ‘(강치와 고래떼어장으로) 기선 혹은 범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후일을 기약하였다. 그러나 독도 영토소속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문도 없었고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어장 개척을 기록하였다.

독도가 알려진 것은 1897년 오키도 오징어어민이 울릉도에서 오키도로 돌아가던 중 독도부근에서 조난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다<sup>23)</sup>. 오키도 어민 수색 과정에서 포획된 강치가 알려지자 ‘각지에서 어민이 운집’할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독도 향로는 울릉도 향로보다 어렵고 울릉도를 수차례 왕복한 사람들조차 독도어업을 반대하였다.

21)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伝」 『成功-立志獨立進歩之友』 동경, 成功雜誌社.

22) 田村清三郎(2011)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総務部総務課, p.37.

23) 1897년경 독도에서 강치를 잡고 돌아왔을 때 각지의 어부들이 앞을 다투어 몰려들었다고 하였다(앞의 奥原碧雲, p.7. 앞의 田村清三郎, p.37.).

메이지 36년(1903년) 그 (나카이 요자부로\_주)는 다시 리양코섬 강치 포획업을 기도하게 된다. 그러나 친구나 지인 모두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특히 마노 데츠타로(真野哲太郎)씨처럼 매우 불가능한 일이라고 경고하였다. 오키국 도젠인들이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여 실패한 경험(歷史)를 거론하면서 열심히 충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카이씨의 결심은 확고부동하여 흔들리지 않았다.<sup>24)</sup>

1903년 나카이는 큰 결심을 하고 독도로 갔다. 그러나 독도로 갔을 때 이미 울릉도인을 비롯한 오키도인이 나타났고 많은 어민들의 진출로 ‘수년이 지나지 않아 남획’될 정도로 어장이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국정부에 독점적 어업권을 신청하고자 하였다. 당시 오키도를 근거지로 울릉도를 향해한 어선들은 1894년경 야마구치현(山口縣) 아부군(阿武郡)에서 개발된 갑판을 둘러 공기실을 만든 개량형 어선을 타고 왕래하였다. 이 가운데 오키도 고가촌(五箇村) 구미(久見)어민은 1903년 전후 고가촌(五箇村)강치어업조합을 조직하고 출어하기 시작하였고 동년 이 소문을 듣고 나카이도 진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죽도문제연구회 『100문 100답』에서는 1905년 나카이의 영토 편입원 청원은 ‘과당경쟁 상태가 되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오키도를 근거지로 한 오키인의 어장 진출은 1903년경으로 과당경쟁이 발생해 영토편입원이 제출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울릉도를 근거지로 진출한 울릉도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적 가치가 큰 어장을 발견한 나카이는 한국에 독점적 어업권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용해 일본 고위 관료들은 영토 편입원을 청원하도록 사주하였고 그 댓가로 그에게 10년간의 독도어장 어업권을 허락하였던 것이다.

#### 4. 「해달·물개어렵법(臘虎膾膈獸獵法)」에 따른 독도 강치어업

명치기(明治期) 일본의 어장제도는 종래의 어민 실적을 중시한 구관(旧貫) 중시주의로 어민에게 어업허가와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이용 체계를 적정화하

24)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伝」.

는 근대적 어업제도이다. 명치시대 자유로운 어장 이동과 어장 확대로 점유 이용권이 발생하였고 어장은 발견한 어민이 이용하는 것이 당연했다. 나카이보다 먼저 오키도 고가촌(五箇村) 구미(久見) 어민이 강치어장을 ‘발견’ 또는 ‘선점’ 하였으므로 어업권은 선점한 어민이 확보하는 것이 어업법의 기본 원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강치 1마리의 가격이 소 10마리의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가치가 있었으므로 만약 이 어장이 일본의 주장대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구미 어민들이 어업권을 제출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나카이를 비롯한 후발 진출어민들을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구미 어민들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업권에는 관심이 없었다. 유독 나카이만은 돌출된 행동에 나섰고 이것을 이용한 것이 일본정부였다.

다음으로 영토 편입 이후의 「해달·물개어렵법(臘虎臘肭獸獵法)」의 적용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어렵법 제1조 해수어업은 농상무성 대신에게 면허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농상무성 대신에게 면허를 받지 않으면 20~5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포획물은 몰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독도어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민은 어업권을 제출하면 어업은 허락된다. 그러나 시마네현은 어장단속규칙을 적용해 독도어장을 단속어장으로 변경하였다. 어장 보호와 관리차원에서 독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어업자를 선정하였고 독점적 어업권을 확립하기 위해 죽도어렵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나카이보다 먼저 독도어장을 선점한 지역 어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법인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편파적인 행정 조치로 공동어업권자 이구치 류타(井口龍太)는 명색뿐인 공동어업권을 포기하고 나카이 요자부로를 비난하였다<sup>25)</sup>.

해방후 죽도어렵합자회사 사원 하시오카 유지로(橋岡友次郎)의 아들은 현행정을 비난하면서 ‘나카이는 죽도어렵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이 되었고 (나의 아버지를) 회사 사원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하였다<sup>26)</sup>. 시마네현은 나카이에게 독점적 어업권을 확립시키기 위해 독도어장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어업조합에게만 부여하는 공동어장 이용권을 허락하였다.

25) 김수회(2010)「나카이 요자부호와 독도어업」『인문연구』5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47-148.

26) 문서번호 001-02, 奥村亮(奥村平太郎의 장남), 1953년 7월 11일 구술서 (島根県総務部総務課所蔵, 『渉外関係綴』(1951).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해달·물개어렵법(臘虎臘豚獸獵法)」은 해수류의 번식지를 보호하여 어선, 어구, 어획방법, 암수컷, 포획 연령을 제한한 것이다. 이를 어기는 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중벌과 20엔~500엔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는 규정이 있다. 1904년 나카이가 제출한 강치 보호 방법 설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 ① 길이 8척(尺=30.3cm)이상이 아니면 절대 포획하지 않을 것
- ② 한 기간 중 500마리 이상 포획하지 않을 것
- ③ 사수(射手) 한 사람이 포획 배를 한 척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
- ④ 보호 어장을 설치하여 장내에서는 일절 포획하지 않을 것
- ⑤ 분만 중일때는 포획을 참작할 것
- ⑥ (강치)해치는 천적 범고래와 상어류를 계속해서 쫓아 버리고 포획할 것<sup>27)</sup>

이 이외에도 모든 해조류를 채집하지 않을 것, 포획 외에는 강치를 놀라게 하거나 생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보호장은 수년을 건너 뛰어 섬 전체에서 돌아가며 설치할 것 등을 번식장을 최대한 보호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나카이의 강치 보호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다. 1905년 7월 22일 사세보 진수부 사령관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는 독도주변이 ‘부근의 조수가 황색을 띠고 이상한 악취가 나서 도저히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다’고 알려왔다<sup>28)</sup>. 강치를 500마리 이상은 잡지 않겠다고 약속한 나카이는 지키지 않았고 강치를 남획하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1개월에서 1년 이하의 중죄, 20~500엔 이하의 벌금, 어업권 박탈 등에 처한다는 처벌 규칙이 있었으나 나카이는 간단히 구두로 시정 조치를 받았을 뿐이었다. 독도는 나카이의 소유물로 인정되었고 일본은 독도어장 보호나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독도 강치는 무차별적으로 포획되었다. 죽도어렵합자회사 기록을 보면 1906년 수컷 488두, 암컷 829두, 새끼 602두, 계 1,919두를 포획하였다. 1907

27) 島根県総務部総務課(2011), 『島根県 所蔵行政文書 1』.

28) 同人들의(물개잡이-주) 해위에 의하면 물개의 가죽을 벗겨 고기는 그대로 동해안에 투기하여 그 수는 매우 많다. 점차 부패하여 부근 조수는 황색으로 비쳐 일종의 이상한 악취를 풍겨 도저히 보통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다. 그런데 본부에 있어서 영조 건물 설비 때문에 필요인원을 주둔시켜서 위생상 어려움을 금할 수 없다.(문서번호 019-01, 佐鎮機密第7号/49, 「竹島海驢漁獵者腐敗海驢投棄ニテ投棄方法嚴達及照会写」, 佐世保鎮守府司令長官이 島根県知事에게, 1905년 7월 4일(島根県総務部総務課所蔵, 『「秘」竹島』, 1905-1908년)).

년 수컷 427두, 암컷 1,075두, 새끼 602두, 태자(胎仔) 88두로 총 2,192두, 1908년 수컷 273두, 암컷 1,284두, 새끼 123두, 젓먹이 37두, 태자 173두, 계 1,890두로 암컷을 주로 포획하고 있었다. 그는 임신한 강치와 새끼 강치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그물로 잡았고 크고 성질이 무서운 수컷은 기술 미숙으로 잡지 못하였다. 전체 포획수 중 암컷과 새끼의 비율은 1906년 73%, 1907년 80%, 1908년 86%로 매년 증가하였다. 그는 어장 보호에는 관심이 없었고 독도를 남획한 후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물개, 해달어장으로 이동해 가본가의 성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sup>29)</sup>.

## 5. 맺음말

19세기말 일본 근해 어장으로 영미어렵선이 출몰하자 일본은 국방상의 이유로 어렵선들을 쫓아내고 자국어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일본은 쫓아내기 위해 1894년 「해달·물개어렵법(臘虎臘肭獸獵法)」을 제정하였다.

이 어렵법은 일본의 어렵업을 발달시키는 목적으로 어렵자가 농상무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락하는 허가제어업이었다. 그러나 독도로 진출한 오키도 어민들은 일본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후속어민들의 진출을 막지 않았다. 당시 강치 1마리의 가격이 소 10마리의 가격 정도로 가치 있는 어장이었지만 독도로 진출한 오키도인들은 울릉도인과 함께 어업을 하면서 어렵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유독 나카이만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쫓겨난 경험으로 한국정부에 어렵허가원을 제출하려는 돌출된 행동에 나섰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일본정부였고 이로 인해 일본은 어민의 자발적 행동으로 영토 편입원이 제출되었다고 왜곡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영토편입 후 독도는 「해달·물개어렵법(臘虎臘肭獸獵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오키도어민 13명이 어렵허가원을 제출하였으나 시마네현은 독도를 어렵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업규칙단속법을 적용하였다. 나카이의 독점적 어업권을 허락하기 위해 어업자를 선별했고 죽도어렵합자회사를 설립해 어민들의 반발

29) 김수희(2010)「나카이 요자부르와 독도어업」『인문연구』5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46-149.

을 법적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시마네현은 독도를 나카이의 사적 소유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카이는 강치를 몰살하였고 1925년경 죽도어렵합자회사가 해체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어업 실패를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1925년경 죽도어렵합자회사가 해체되자 독도는 다시 울릉도를 근거지로 한 잠수기어선어장으로 울릉도인의 어장이 되었다. 죽도어렵합자회사의 어업권을 구입한 오키도인은 몇 십마리의 강치를 생포할 뿐 비정기적으로 이용하였고 울릉도를 근거지로 한 울릉도인들은 매년 봄철부터 가을까지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전복과 해삼, 소라, 미역등을 포획, 채취하였다.

강치의 멸종이 확인된 지금 일본은 강치어장을 되찾아야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독도는 울릉도인들의 미역과 전복어장으로 울릉도인의 삶의 터전이면서 부속섬으로 활용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 【참고문헌】

- 李漢 『星湖僿說』 제3卷, 天地門, 「鬱陵島」,  
東国文献備考』『輿地考』; 安龍福.  
김수희(2010)「나카이요자부르와 독도어업」『인문연구』58, 영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pp.128-156.  
박병섭(2009)「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45-87.  
송휘영·김수희역(2013) 『독도=죽도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도서출판선인(竹内猛  
『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報光社)  
이규원 『검찰일기』.  
이예균·김성호(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 88』 p.307.  
「친석짜리 뗏목배로 내왕」『민국일보』, 1962년 3월 20일자.  
최장근(2011)「한국의 울릉도·독도개척사에 대한 일본의 조작행위」『일본문화학보』51,  
한국일본문화학회, pp.427-426.  
岡本信南(1965) 『近代漁業發達史』水産社, p.103.  
奥本直人(1980) 「北太平洋オットセイの系統群とその混合」 『遺伝』 34卷 2号.  
奥村碧雲(1907) 『竹島及鬱陵島』報光社, pp.23-62.  
片山房吉(1983) 『大日本水産史』 有明書房, pp.411-412.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185.

島根県総務部総務課(2011) 『竹島問題関係資料第2集 島根県所蔵行政文書』島根県.  
島根県総務部総務課(2011) 『島根県 所蔵行政文書 1』.  
島根県総務部総務課所蔵(1905-1908) 『「秘」竹島』.  
「竹島経営者中井養三郎氏立志伝」『成功-立志独立進歩之友』동경, 成功雜誌社.  
竹島問題研究会(2014) 『竹島問題100問100答』 WILL출판.  
田村清三郎(2011)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総務部総務課, p.37.  
日本外務省(2014) 『竹島』 「竹島問題10のポイント Q&A付き」.  
二野瓶徳夫(1981) 『明治漁業開拓史』 平凡社, p.143.  
農商務省水産局(1918) 『遠洋漁業奨励事業報告』, p.4.  
web竹島問題研究所  
([http:// www.pref.shimane.lg.jp/ 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

논문 투고 일자 : 2016.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16. 07. 25.
게재 확정 일자 : 2016. 07. 27.

## ＜要旨＞

日本の「臘虎膾肭獸猟法」と独島アシカ

金秀姫

本研究は、東海上の唯一の哺乳類繁殖場である独島での漁場利用方法を1894年公布された「臘虎膾肭獸猟法」で考察したものである。19世紀末期、日本は日本領海へ進出する外国漁船を追い出し、自国の漁業を発達させるために許可願を提出すれば可能な漁法を制定した。しかし、独島へ進出した日本漁民は許可願を提出しないで競争的に濫獲した。ただ、ロシア漁場で漁業権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中井養三郎だけが韓国政府に許可願を提出しようとした。領土編入後、独島は「臘虎膾肭獸猟法」の適用対象から除かれ、中井養三郎の独占的漁業権の片落ちに利用された。独島は中井養三郎の所有物へと転落され、主にメスと子アシカが大量に虐殺されて破壊された。結局、1925年頃、竹島合資会社が解体されると独島漁場の所有権者である隠岐漁民は漁場を鬱陵島にある潜水機魚民に販売し、殆んど行かなかった。隠岐漁民が漁場の官吏を鬱陵島人に任せて行かなかったのは漁場の価値がなかったことのみならず、独島を鬱陵島の附属島として認識したからである。

Japanese 「Sea Otter-Fur Seal Fishing Law(臘虎膾肭獸猟法)」 and Dokdo Sea Lion

Kim, Soo-Hee

This study focused on the Japanese fisher's fishing manner in the Dokdo sea lion fishing field which is the only mammal breed area in the East Sea through 「sea otter-fur seal fishing law(臘虎膾肭獸猟法)」 announced in 1894. Japan prepared abbreviated fishing laws which demand an application for fishing licenses to develop the national fishing industry after the advance of foreign fishing vessels into the Japanese territorial sea in late 19th century. However, Japanese fishers who advanced to Dokdo competitively over hunted without the required licenses. Only Nakai who failed to receive fishing licenses and expelled from Russian fishing fields tried to submit fishing license applica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Nakai received sole fishing rights anomaly from the Japan government excluding 「Sea Otter-Fur Seal Fishing Law(臘虎膾肭獸猟法)」 after the annexation of Dokdo. As a result, the Dokdo fishing field became Nakai's private fishing field to massacre female and baby sea lion. When Takeshima Fishing Corporation dissolved, people of Kumi region who owned Dokdo fishing field rights sell the right to Ulleungdo diving fishers and stopped sail to Dokdo. Fishers from Oki trusted fishing field management to Ulleungdo fishers, which recognized Dokdo as annexation of Ulleungdo.